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1,462,805,382 | 43,884,161 |
| 일반회계 | 1,119,674,114 | 33,590,223 |
| 특별회계 | 343,131,268 | 10,293,938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32,896,860 | 6,986,906 |
| 상수도사업 | 82,790,690 | 2,483,721 |
| 하수도사업 | 150,106,170 | 4,503,185 |
| 기타특별회계 | 110,234,408 | 3,307,032 |
| 공유재산관리 | 32,350,963 | 970,529 |
| 의료급여기금 | 5,473,153 | 164,195 |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| 1,319,000 | 39,57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| 244,720 | 7,342 |
| 교통사업 | 38,076,030 | 1,142,281 |
| 철도건설사업 | 10,859,023 | 325,771 |
| 폐기물처리시설 | 7,549,990 | 226,500 |
| 도시재정비촉진 | 1,281,662 | 38,450 |
| 도시개발 | 1,309,120 | 39,274 |
| 기반시설 설치 | 3,627,700 | 108,831 |
| 도시재생 | 8,143,047 | 244,291 |

제 2 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 · 세출예산 사업명세서' 와 같다.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994,238천원으로 한다.

(1) 일반예비비 6,994,238천원

(2)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2,000,000천원

제 7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6,1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